

『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“청년창업자”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 - 지원 대상 : 소상공인
 - 지원 내용
 - 지원 한도 :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이내 → 3천만원 이내
 - ※ 청년창업자 지원 신설 : 1명당 5천만원 이내
 - 청년창업자, 착한가격업소, 신용등급 관계없이 지원
 - 지원 기간 : 5년 이내

○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· 지원 대상 : 특례보증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

· 지원 내용

- 지원 한도 :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

- 지원 기간 : 2년 이내

○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은행법」,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 「상호저축은행법」, 「새마을금고법」,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한도 증액 및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